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리전력부 사이의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문사업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리전력부는 두나라 국경하천인 압록강과 두만강의 (아래에는 국경하천이라고 한다)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도록 수문사업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쌍방은 수문사업에서 협조해야 할 실천적요구로부터 국경하천의 본류 및 국경하천류역의 자기나라지역에 설치된 수문관측소들의 수문자료와 수문전보를 상대측에 보내준다.

이 관측소들의 지점번호, 지점명과위치, 교환할 자료와 통보할 항목, 전보를 더 쳐야 할 기준,

전보를 받을단위 등은 이 협정의 부록과 같이 한다.

제 2 조

쌍방은 어느 일방이 이 협정부록에 밝힌 다른 일방에 제공하는 관측지점 (관측소이동 포함), 교환할 자료와 통보할 항목, 전보를 더 쳐야 할 기준들을 고치며하거나 상대측에 교환할 자료와 통보할 항목, 전보를 더 쳐야 할 기준, 전보를 받을 단위들을 고쳐줄것을 요구할때 그리고 관측지점들을 새로 더 증가시켜줄것을 요구할 때에는 전해의 6월 전에 상대측에 제기하고 호상 합의하여야 한다.

제 3 조

쌍방은 어느 일방이 국경하천본류의 상대측 하천연안지역에 수문관측용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려하거나 이미 세워놓은 시설물을 수리정비하며 이동하려할 때 그리고 자기측지역에 이미 세워놓은 상대측관측시설물을 불가피하게 옮겨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때에는 두달전에 도, 성급수문관리 기관사이에 서신으로 합의를 한후 진행하여야 한다. 쌍방은 각각 자기측경내에 설치된 상대측 수문관측용시설물과 표식물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돌려야하며 관측하는 구역안에 나무를 심거나 물 흐름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문관측에 편리를 도모하며 관측의 절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위의 요구와 다른 정확이 생겼을 때에는 도, 성급 수문관리기관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할수 있다.

제 4 조

수문관측방법과 기술적표준 및 자료처리방법은 각각 자기 나라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 쌍방은 해당한 규정들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만일 규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상대측에 알려야 한다.

제 5 조

쌍방은 국경하천본류에서 특수한 수문현상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상 합의한후 조중 수문연합조사단을 무어 답사사업을 진행할수 있다.

제 6 조

쌍방은 이 협정부록에 있는 수문관측지점의 수문자료 (관측소설명서와 관측소위치도, 하루평

균물높이표, 물흐름량관측종합표, 하루평균흐름량표, 큰물때 수문요소표, 강수량표, 큰물때 비내린 자료, 큰자름면계산표, 저수지수문요소표)들을 매해 각각 편집인쇄하여 호상 20부씩 무상으로 교환한다.

제 7 조

쌍방은 매해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간에 매일 전보로써 지정된 관측소들의 수문전보를 호상 통보한다.

제 8 조

쌍방은 수문전보를 보낼 때 각각 자기 나라에서 제정한 전보문양식에 따라 타전한다.

쌍방은 수문전보문양식과 그에 대한 설명서, 수문학적참고자료 (관측소집수면적, 저수지언계 높이, 일류언의 높이, 최대방출량, 수위용적관계 곡선)를 서로 교환하며 만일 이것들이 달라진 경우에는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전보료금은 전보를 보내는 측이 각각 부담한다.

제 9 조

쌍방이 제공하는 수문전보는 신속정확하여야

한다. 수문전보는 관측후 30분이내에 발송하여야 하며 전보문에서 틀린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전보를 쳐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수문전보내용에 대하여 문의해오는 경우 이를 제때에 답변해주어야 한다.

제 10 조

쌍방은 국경하천본류에서 수문관측을 하는 인원과 수문관측용 시설물을 시공하는 인원들이 상대방경내에 들어갈 때에는 조, 중 국경지역 안전총대표가 발급한 수문작업증을 가져야 한다.

제 11 조

이 협정은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12 조

이 협정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1957년 12월 31일에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기상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리부 사이에 수문사업분야에서 호상 협조할데 대한 협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만일 쌍방중 어느 일방이 협정만기 6개월전에 이 협정을 폐기할데 대한 의견을 문건으로 상대방에 제기하지 않는한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1년간씩 계속 연장된다.

이 협정은 1978년 6월30일 베이징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어와 중국어로 각각 두부씩 작성된 이 두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국의 위임에
의하여

백 옥 현



중화인민공화국
수리전력부의 위임에
의하여

리 백 녕

李伯宁